

국가회계 재지토계

ISSN 2635-7119

2023년 여름호
Vol. 35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국가회계 동향

IPSASB ED 84 '할인리스 및
무상 사용권자산' 의견 제출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재정통계 동향

2022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센터 동향

센터 연구 진행 동향

CONTENTS

2023년 여름호

Vol. 35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국가회계 재지토계

국가회계 동향

- 04 IPSASB ED 84 '할인리스 및 무상 사용권자산' 의견 제출
- 11 「국가회계법」 개정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14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 17 2023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7~9월)

VOL. 35

계간 국가회계재정통계 2023년 여름호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편집 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문창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부소장
 진태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윤성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장(결산교육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윤영훈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연구TFT팀장(회계연구 총괄)

전화 044-414-2265(센터)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
발행일 2023년 6월 30일
제작처 경성문화사

재정통계 동향

- 22 2022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 23 「2021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발간
- 26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 33 「2023 알기 쉬운 재정통계」 발간



공익법인회계 동향

36 공익법인 주식 표준안 도입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세미나

48 2023년 한국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발표

55 국제정부회계비교연구네트워크 주최
'CIGAR Network 2023 컨퍼런스' 발표

57 2023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65 제2차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
「국내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의 이해」

센터 동향

40 센터 연구 진행 동향

45 제4회 KIPF 발생주의회계 국제심포지엄 추진 안내



공지사항

75 구독 안내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
재지통계



국가회계 동향



- IPSASB ED 84 ‘할인리스 및 무상 사용권자산’ 의견 제출
- 「국가회계법」 개정

01 IPSASB ED 84 ‘할인리스 및 무상 사용권자산’ 의견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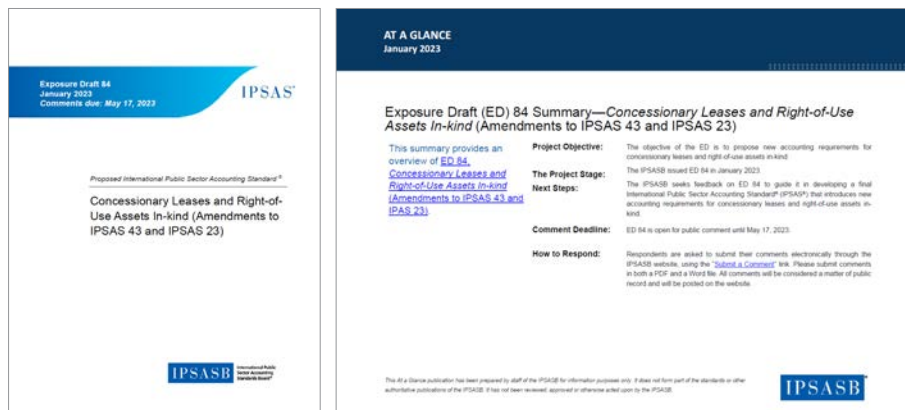
가. 공개초안 발표 배경

IPSASB는 2023년 1월에 리스 회계처리 개선을 위한 공개초안인 ED 84, ‘할인리스 및 무상 사용권자산’¹⁾을 발표하였다. ED 84는 IPSASB가 IPSAS 13, 리스를 IFRS 16, 리스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해 개발한 마지막 공개초안이다. IPSASB는 2018년 1월에 발표한 ED 64, 리스를 통해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와 리스제공자 회계처리에 단일의 사용권 모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한 바 있다. 이후 IPSASB는 리스 회계처리의 개선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고, 우선 IPSAS 13을 IFRS 16과의 정합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한 뒤 여기에 공공부문 특유의 회계처리 이슈를 다루는 개정사항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IPSASB는 IFRS 16과 동일하게 리스이용자에게만 사용권 모형을

1) ED 84, Concessionary Leases and Right-of-Use Assets In-kind (Amendments to IPSAS 43 and IPSAS 23)

적용할 것을 제안하는 ED 75, 리스를 2021년 1월에 발표하였으며,²⁾ 이어 올해 1월에 할인리스 거래, 무상 사용권자산 거래 등을 다루는 ED 84를 추가로 발표한 것이다.

그림 1 ED 84 표지 및 요약 안내자료



출처: IPSASB 홈페이지

나. 공개초안 주요 제안사항

1) 할인리스 거래의 회계처리

할인리스(concessionary leases)는 시장조건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체결한 리스를 말한다. 리스약정일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거래로 인식하게 될 사용권자산의 금액이 리스부채의 금액보다 높은지 비교하여 당해 리스가 할인리스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할인리스의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현재 용도에 기반하여 산정되는 시장요율의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는 계약상 지급액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한다.³⁾ 그리고 그 차액인 할인액은 IPSAS 23, 비교환거래수익에 따라 비교환수익 또는 부채⁴⁾로 인식한다. 만약 리스이용자가 이러한 방식의 시장요율 리스료를 쉽게 얻을 수 없다면 시장조건의 리스와 동일하게 사용권자산의 원가, 즉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을 기반으로 선급리스료 등을 조정한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

2) 현행의 IPSAS 43, 리스는 ED 75, 리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IPSAS 기준서이다.

3)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현재가치를 구할 때 원칙적으로 당해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사용해야 하나, 이를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다.

4) 예를 들어, 사용권자산에 특정 조건(conditions)이 부과된 경우 그만큼 부채(선수수익)로 인식한 뒤 당해 조건의 이행 정도에 따라 비교환수익을 인식한다.

IPSASB가 할인리스의 사용권자산을 그 원가가 아닌 기초자산의 현재 용도에 기반한 시장요율의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① 할인리스나 할인대여금과 같은 비교환거래에서는 원가 측정기준보다 공정가치 측정기준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데 사용권자산의 공정가치의 경우 이미 시장요율의 리스료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과 ② 새로 도입 예정인 공정가치 정의에 '최고 최선의 사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용권자산의 경우 최고 최선의 사용을 달성하기 위한 활성시장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 정의대로 측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리스제공자는 식별된 리스가 할인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험과 효익의 이전 여부에 따라 할인금융리스와 할인운용리스로 분류한다. 할인금융리스인 경우 제거된 기초자산의 장부가액과 새로 인식한 리스순투자의 차액인 할인액을 리스개시일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할인운용리스인 경우 시장조건의 운용리스와 동일하게 정액법 등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2) 무상 사용권자산 거래의 회계처리

무상 사용권자산(right-of-use asset in-kind)은 대가 없이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의미한다. 공공부문실체는 IPSAS 43, 리스에 따른 리스 식별 규정을 적용하여 무상 사용권자산을 식별해야 하는데, 만약 무상 사용권자산을 이미 수취하였거나 이를 수취하기로 한 구속력 있는 약정(binding arrangement)이 있다면 당해 사용권자산과 함께 비교환수익 또는 부채를 인식한다. 이때 무상 사용권자산은 할인리스의 사용권자산과 동일하게 기초자산의 현재 용도에 기반한 시장요율의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한다.

3) 판매후리스 거래의 회계처리

리스약정일에 리스제공자(구매자)와 리스이용자(판매자)는 판매후리스 거래(a sale and leaseback transaction)의 리스(leaseback) 거래에 시장조건을 밀도는 부분이 내재되어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 리스 거래에서 할인액이 식별되었다면 할인을 제공한 리스제공자(구매자)는 그 할인액을 IPSAS 43, 리스에 따라, 할인을 제공받은 리스이용자(판매자)는 그 할인액을 IPSAS 23, 비교환거래수익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다. 공개초안에 대한 센터 의견

IPSASB는 ED 84를 통해 총 4개의 의견요청사항(Specific Matters for Comment)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묻고 있다.

ED 84의 의견요청사항

- (1) 할인리스 및 무상 사용권자산 관련 IPSAS 43 및 IPSAS 23의 개정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
- (2) 리스제공자의 할인리스 회계처리를 시장조건의 리스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한 것에 대한 동의 여부
- (3) 할인리스의 사용권자산 및 무상 사용권자산의 최초 측정 시 리스개시일 현재 기초자산의 현재 용도에 기반한 시장요율의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 (4) 리스개시일 현재 기초자산의 현재 용도에 기반한 시장요율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리스이용자가 쉽게 얻을 수 없는 경우 계약상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센터는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IPSASB 측에 회신하였다.

ED 84의 의견요청사항에 대한 센터 의견서

May 17, 2023
Ross Smith
Program and Technical Director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277 Wellington Street West
Toronto, ON M5V 3H2 Canada

Re: The comments on the Exposure Draft 84, Concessionary Leases and Right-of-Use Assets In-kind (Amendments to IPSAS 43 and IPSAS 23)

Dear Mr. Smith,

The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GAFSC) at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KIPF) appreciates the opportunity to comment on IPSASB's Exposure Draft 84 "Concessionary Leases and Right-of-Use Assets In-Kind".

Overall, we support IPSASB's approach toward the treatment of non-exchange lease transactions at below-market terms, i.e., concessionary leases and right-of-use assets in-kind. To elaborate on our opinion, we provide our responses to the Specific Matters for Comments in Appendix 1.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our submission, please contact Jung-Hyuk Yim at +82 44 414 2553 or email him at junghyim@kipf.re.kr

Yours sincerely,

Sung-Jin Park
Executive Directo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Appendix 1: Responses to the Specific Matters for Comment in ED 84]

Specific Matter for Comment 1:

The IPSASB decided to propose new accounting guidance for concessionary leases for lessees (see paragraphs IPSAS 43.BC124-BC137) and right-of-use assets in-kind (see paragraphs IPSAS 23.BC28-BC30). Do you agree with the proposed amendments to IPSAS 43 and IPSAS 23? If not, please explain your reasons. If you agree, please provide any additional reasons not already discussed in the Basis for Conclusions.

We generally agree with IPSASB's proposal on the lessee's accounting treatment of concessionary leases and right-of-use assets in-kind. As indicated by the ongoing IPSASB Measurement Project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current operational value (COV) measurement bas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public sector transactions may require special consideration of concessionary elements embedded in the below-market terms of the leases.

While IPSASB's proposed amendments adequately address this concern, we would like to suggest one minor change on page 35, para. 107A, which states "For right-of-use assets in-kind, an entity shall disclose in the notes to the general purpose financial statements the:

- (a) Depreciation charge; and
- (b) Carrying amount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by class of underlying asset".

We think that this paragraph may not always be clear to the users due to the following reason.

On page 33, para. 43A, it is stated that right-of-use assets in-kind are to be initially measured at the present value of payments for the leases at market rates based on the current use of the underlying asset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IPSAS 43. At the same time, on page 8, para. 26C, it is also stated that when market rate-based lease payments are not readily available, lessees shall measure the right-of-use asset in the concessionary lease in accordance with, IPSAS 43 paragraphs 27-29.

However, IPSAS 43 paragraphs 27–29 are silent for leases with zero consideration (i.e., right-of-use assets in-kind). Given that IPSAS 43 para. 25 requires measuring right-of-use assets based on para. 27 (which is silent on zero payments), it becomes questionable on what basis the leases with zero payments and no applicable market rate-based lease payments can be measured. If the right-of-use assets in-kind are measured with zero value, they would have zero depreciation base and carrying amount, leaving no meaningful disclosure per para. 107A on page 35. If it was not intended to mandate all reporting entities for such disclosure, the paragraph can be modified to add “if applicable” or list depreciation charges and carrying amounts as “examples” of relevant information that need to be disclosed.

We acknowledge that the exercise of “professional judgmen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is principles-based lease accounting standard. Nonetheless, we believe that para. 107A on page 35 can be improved with additional clarifications.

Specific Matter for Comment 2:

For lessors, the IPSASB decided to propose accounting for leases at below-market terms in the same way as for leases at market terms (see paragraphs IPSAS 43.BC138–BC149). Do you agree with the proposed amendments to IPSAS 43? If not, please explain your reasons. If you agree, please provide any additional reasons not already discussed in the Basis for Conclusions.

We fully agree with IPSASB’s proposal on the treatment of concessionary finance and operating leases. We do not have any further opinions.

Specific Matter for Comment 3:

The IPSASB decided to propose initially measuring right-of-use assets in concessionary leases (see paragraphs IPSAS 43.BC124–BC131) and right-of-use assets in-kind (see paragraphs IPSAS 23.BC28–BC30) at the present value of payments for the lease at market rates based on the current use of the underlying asset at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lease. Do you agree with IPSASB’s decision? If not, please explain your reasons. If you agree, please provide any additional reasons not already discussed in the Basis for Conclusions.

Under the previously issued Exposure Draft 77 – Measurement, the current value model incorporating the current operational value (COV) method was proposed by introducing several principles and application of principles such as “existing asset”, “existing location”, “entry price (rather than exit price)”, and “entity-specific perspective”. These principles appear to be closely aligned with the notion of “current use of the underlying asset” described in the ED.

Given that IPSASB Measurement Project is currently working, IPSASB may need to consider cross-referencing the measurement rules in this Lease standard with the Measurement project.

Other than this, we agree with the proposed amendment of IPSAS 43.

Specific Matter for Comment 4:

When the payments for the lease at market rates based on the current use of the underlying asset are not readily available, the IPSASB decided to propose initially measuring right-of-use assets in concessionary leases (see paragraphs IPSAS 43.BC132–BC133) at the present value of contractual payments for the lease. Do you agree with IPSASB’s decision? If not, please explain your reasons. If you agree, please provide any additional reasons not already discussed in the Basis for Conclusions.

Yes, we agree with the proposed amendment for the initial measurement at the present value of (below-market rate) contractual payments in that case.



02 「국가회계법」 개정



기획재정부는 2023년 6월 14일 현행 결산체계에서 세입·세출결산을 통해 국가재정의 현금흐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결산서가 회계·기금별로 분산되어 있고, 예산과목 수준으로만 결산정보가 집계되어 통합적인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을 보완하고자 국가재정의 현금흐름 정보를 재정활동별(정부운영·투자·재무활동)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표를 결산보고서에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회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 내용은 「국가회계법」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에 현금흐름표를 추가하는 것이며, 개정 법률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현금흐름표의 작성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금흐름표의 신설은 기획재정부가 2022년 12월 16일 발표한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 중 하나로, 관련 시행규칙(「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예규」 개정 작업도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가회계
재지통계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 2023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7~9월)

01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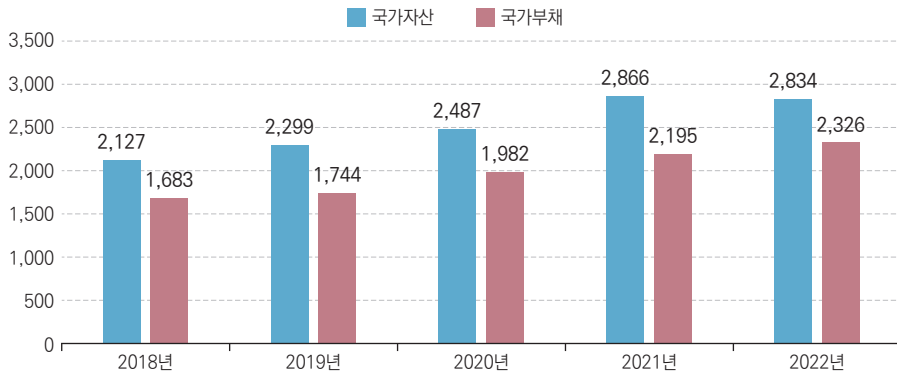


정부는 5월 31일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를 수정 반영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국가결산보고서」를 같은 달 10일 감사원에 제출하였으며, 감사원은 결산검사 수행결과를 5월 20일 기획재정부에 송부하였다.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 국가자산은 2.7조원, 국가부채는 0.3조원이 감소하였다.

2022회계연도 말 현재 국가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2,833.6조원, 부채는 2,326.0조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07.6조원으로 집계되었다. 기금 여유자금 감소 등으로 자산이 전년 대비 32.5조원(1.1%) 감소하였으며,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 증가와 재직자의 근무기간 증가 등에 기인한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등으로 부채는 전년 대비 130.6조원(6.0%) 증가하였다.

그림 1 연도별 국가자산과 국가부채

(단위: 조원)



출처: 대한민국정부, 2018~2022회계연도의 「국가결산보고서」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국가자산의 구성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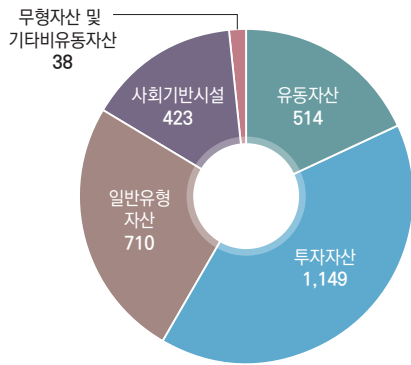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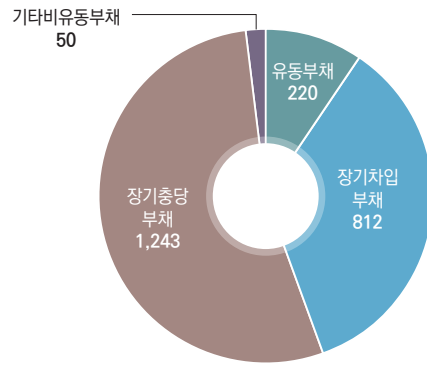


그림 3 국가부채의 구성

(단위: 조원)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2.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말 현재 자산 세부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의 경우 단기투자증권 323.4조원, 단기금융상품 41.8조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 41.3조원 등 총 513.8조원이며, 투자자산은 장기투자증권 794.4조원, 장기대여금 193.1조원 등 총 1,148.8조원이다.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465.6조원, 건물 68.3조원 등 총 710.4조원이다.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257.9조원, 철도 44.0조원 등 총 422.9조원이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2.3조원 등 총 2.5조원이다. 기타비유동자산은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20.0조원, 장기미수채권 15.2조원 등 총 35.2조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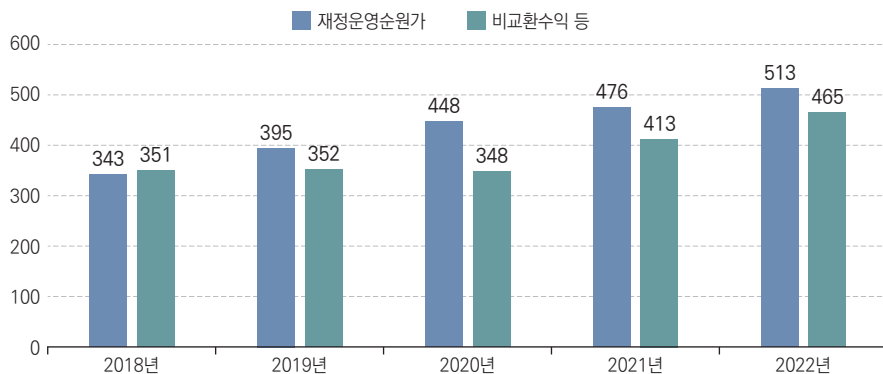
2022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총 2,326.0조원으로 전년 대비 130.6조원 증가하였다. 주요 요인은 장기차입부채 56.2조원, 장기충당부채 43.8조원, 유동부채 32.6조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2년 말 현재 부채 항목 중 장기충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53.5%, 장기차입부채는 34.9%, 유동부채는 9.5%를 차지한다.

2022년 말 현재 부채의 세부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95.5조원, 유동성장기차입부채 96.4조원 등 총 220.0조원이고, 장기차입부채는 국채(자기국채 차감) 792.1조원, 공채(자기공채 차감) 17.2조원 등 총 812.2조원이다. 장기충당부채 1,243.2조원은 연금충당부채 1,181.3조원, 퇴직수당충당부채 52.8조원, 기타 9.1조원(보증충당부채 5.6조원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비유동부채 50.4조원은 장기미지급이자를 포함한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37.1조원, 장기미지급금 13.3조원이다.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순원가는 512.5조원이며, 비교환수익 등 464.8조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47.8조원이다. 이는 재정운영에 따른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였음을 나타낸다. 재정운영순원가는 전년 대비 36.4조원이 증가하였고, 비교환수익 등은 국세수익의 증가 등으로 52.1조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63.4조원에서 47.8조원으로 전년 대비 15.6조원 감소하였다.

그림 4 연도별 재정운영순원가와 비교환수익

(단위: 조원)



출처: 대한민국정부, 2018~2022회계연도의 「국가결산보고서」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이번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02 2023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7~9월)



2023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1차 국가회계실무 과정(6. 23.(금),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6월 21일부터 시작한 2023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이 오는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열린다. 올해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집합교육을 기본으로 전국 7개 주요 도시(서울(2회), 광주, 대전, 부산, 제주, 대구, 세종(2회))에서 9회차의 과정을 진행하며, 추가적으로 과정당 1차수를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병행 운영하여 더 많은 교육생이 교육장소와 일정에 구애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획재정부가 주최하는 이 교육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왔다. 특히, 2018년부터는 안정적인 교육 관리와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가회계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가 이 교육을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실무, 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생이 자신에게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국가회계이론’ 과정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 국가회계제도의 이해 등 과목을 통해 회계에 관심 있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회계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국가회계실무’ 과정은 업무유형별 dBrain 오류사례 및 해결방법 등의 과목을 통해 회계 담당 공무원이 회계 관련 업무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재무결산실무’ 과정은 재무결산 담당자가 2023회계연도 재무결산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결산업무 진행 순서대로 세부 교육 과정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정책적인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급 과정으로, 국가회계이론을 사전에 수강하고 해당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표 1 교육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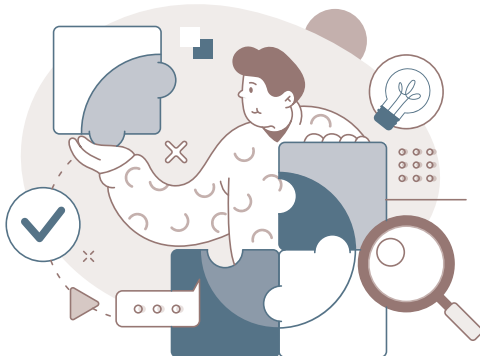
과정 차시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1 일차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	5.0	1. 일반회계의 이해 2. 재무제표의 이해 3.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이해 4. 회계순환과정의 이해	
	[온라인 교육] 회계순환과정 실습	-	1. 회계거래의 식별부터 계정의 마감까지	
국 가 회 계 이 론	국가회계제도의 이해	2.0	1. 국가재정체계 2. 국가회계의 의의와 구분 3. 국가회계법령의 개요 4. 국가회계기준의 체계와 주요 내용 5.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	
	[실습] 국가재무정보 기초사례 연습	1.0	1. 국가재무정보 이해를 위한 기초사례 2. 사례를 기초로 한 국가의 예산, 추경, 재정, 프로그램, 회계와의 관계	
	세입세출거래와 복식부기	1.5	1. 세입세출거래의 복식부기 변환 2. 발생원인에 따른 세입세출거래의 3가지 유형 3. 세입세출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연계 4. 수익·원가·자산·부채와 국가회계의 특성	
	2 일차	결산조정과 발생주의	1.5	1. 결산조정: 발생주의 재무정보로의 전환 2. 자산·부채평가 3. 기간손익 조정 4. 비현금거래와 원가의 재분류
	[실습] 종합사례 연습	3.0	1. 종합사례의 기본 가정 2.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현금흐름과 회계기록 3. 현금주의에 따른 복식부기 기록방식 및 회계처리 4. (현금주의) 수정전자산표 5. 발생주의 항목의 이해 및 회계처리 6. (발생주의) 수정후자산표와 재무제표	

표 1 의 계속

과정	차시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국가회계실무	1 일차	업무유형별 dBrain 오류사례 및 해결방안	5.0	1. 유형별 dBrain 업무 처리 유의사항 - 수입·지출 관련 유의사항 (1, 2, 4, 5, 6, 8, 10차 교육) - 국유재산, 물품 관련 유의사항(3, 7, 9차 교육)
		재무제표를 통해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2.0	1.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하는 이유 2. 재정운영표 살펴보기 3. 재정상태표 살펴보기 4. 주식 등 기타 정보 살펴보기
재무결산실무	1 일차	재무결산의 이해	1.5	1. 국가회계의 의의와 도입과정 2. 국가회계 관련 법령 3.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 4.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2023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2.0	1. 국가회계편람 수정사항 2.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3.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 4. 수정전산표 마감전 유의사항 및 마감
		감사원 지적사례	2.5	1.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 2. 주요 감사원 지적사례
	2 일차	내부거래실무	1.5	1. 내부거래의 의의 2. 내부거래 제거방식 3. 결산담당자 유의사항 및 처리방법
		결산조정분개	2.0	1. 국가회계 결산조정분개의 이해 2. 결산조정분개 오류사례
		결산보고서 작성	2.5	1. 결산작성지침 개요 2. 결산보고서 생성 3. 결산보고서 발행
국가회계의 활용	1 일차	국가회계정보와 결산보고서	1.0	1.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2. 정보로서의 국가결산보고서의 이해
		프로그램세출과 프로그램원가, 그리고 재정운영표의 해석	3.0	1. 국가회계에서의 원가계산의 의미 2. 프로그램세출 정보 3. 프로그램세출과 프로그램원가의 관계 4. 프로그램 원가정보의 특성 및 활용방안 5. 재정운영표의 이해 6. 종합사례
		자산, 부채, 그리고 재정상태표의 해석	2.0	1. 재정상태표 개념 및 의의 2. 자산구성: 금융자산과 서비스자산 3. 부채구성: 금융부채와 총당부채

표 2 교육 개요

교육 기간	2023년 6~10월(총 13회차)
교육 지역 및 방식	전국 7개 주요 도시에서 집합교육(9회차)으로 진행하고, 과정당 1개 차수(4회차)는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병행 실시
대 상 자	국가회계 관련 국가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 인원	회차당 약 80~120명
교육 과정	국가회계이론 과정(2일간, 10회), 국가회계실무 과정(1일, 10회) 재무결산실무 과정(2일간, 2회),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1일, 1회)
수강 신청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https://www.kipf.re.kr/edu/)에서 신청





재정통계 동향



- 2022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 『2021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발간
-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 『2023 알기 쉬운 재정통계』 발간

01 2022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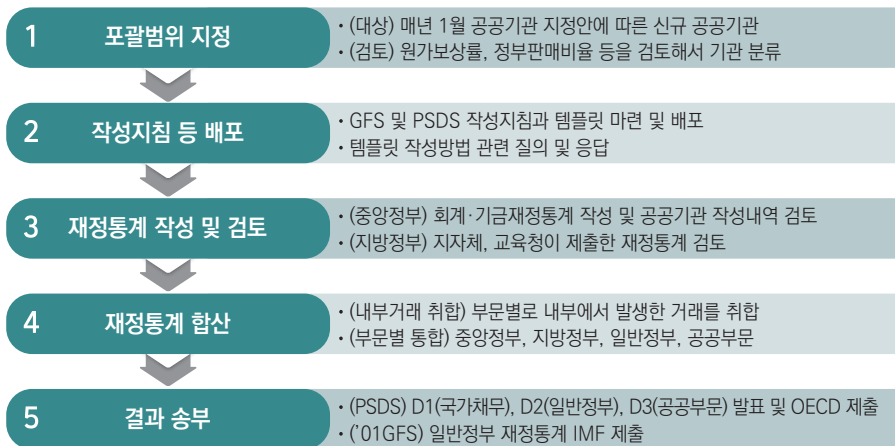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2011년 재정통계 개편 이후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통계(GFS) 및 공공부문 부채통계(PSDS)를 매년 작성해 오고 있다.

(1) 포괄범위 지정

매년 신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장성 테스트(원가보상률 및 정부판매비율)를 수행하여 비영리공공기관과 공기업(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으로 구분한다. 2023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6개이며, 모두 일반정부로 분류되었다.

(2) 재정통계 통합 및 결과 송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등의 재정통계를 확정하면, 부문별로 재정통계를 합산하고 내부거래를 고려하여 일반정부 재정통계(GFS)와 공공부문 부채통계(PSDS)를 산출한 후 연말에 관련 재정통계를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02 『2021 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발간

기획재정부는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발간하고 있다.

『2021 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통해 GFSM 1986 기준에 따른 중앙정부 결산 통합재정수지와 GFSM 2001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결산 재정수지를 발표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월별·연도별 재정통계와 추이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GFSM 1986 기준에 따른 중앙정부 결산 통합재정수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재정수지

2021 회계연도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는 30.5조원 적자(GDP 대비 $\Delta 1.5\%$)로, 통합재정수입은 537.6조원(GDP 대비 26.0%), 통합재정지출은 568.1조원(GDP 대비 27.4%)을 기록하였다.

부문별 수지는 일반회계 7.0조원, 기타특별회계 $\Delta 31.6$ 조원, 기업특별회계 0.4조원, 기금 $\Delta 3.8$ 조원, 세입세출외 $\Delta 2.5$ 조원으로 구성된다.

표 1 2021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 총괄

(단위: 십억원, %)

구분	수입(A)	지출(B)	통합재정수지(A-B)
합계 (GDP 대비, %)	537,619 (26.0)	568,113 (27.4)	△30,494 (△1.5)
- 일반회계	346,715	339,740	6,976
- 기타특별회계	18,603	50,222	△31,619
- 기업특별회계	3,449	3,077	372
- 기금	168,751	172,510	△3,759
- 세입세출외	100	2,564	△2,464

출처: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23. 3. 31., p. 43.

(2) 통합재정수입

통합재정수입은 전년(446.6조원) 대비 20.4% 증가한 537.6조원을 기록하였다. 국세수입은 소득세 및 법인세 증가(35.9조원↑)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보다 58.5조원 증가하였고,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3.5조원, 세외수입은 29.3조원 각각 증가하였다.

표 2 전년 대비 수입원별 수입 비교

(단위: 십억원, %)

구분	국세수입	사회보장 기여금	세외수입	자본수입	계
2020년(A)	285,546	74,583	83,565	2,934	446,628
2021년(B)	344,078	78,104	112,818	2,620	537,619
증감(B-A)	58,532	3,521	29,253	△314	90,991
(증감률)	(20.5)	(4.7)	(35.0)	(△10.7)	(20.4)

출처: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23. 3. 31., p. 45.

(3) 통합재정지출

통합재정지출은 전년(517.8조원) 대비 9.7% 증가한 568.1조원을 기록하였다.

부문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는 경상지출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9.0조원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경상지출을 중심으로 5.8조원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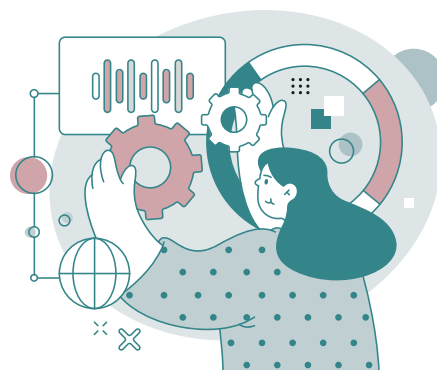
기금은 경상지출·순융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24.6조원 증가하였고, 기업특별회계는 경상지출 감소 등으로 1.2조원 감소하였다.

표 3 전년 대비 회계·기금별 지출 비교

(단위: 십억원, %)

구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기금	기업 특별회계	계
2020년(A)	320,760	44,425	399	147,879	4,318	517,781
2021년(B)	339,740	50,222	2,564	172,510	3,077	568,113
증감(B-A)	18,980	5,797	2,165	24,631	△1,241	50,332
(증감률)	(5.9)	(13.0)	(542.6)	(16.7)	(28.7)	(9.7)

출처: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23. 3. 31., p. 45.



03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우리나라는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발생주의 통계작성기준인 재정통계편람 2001(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2001: 이하 'GFSM 2001')에 따라 재정통계를 산출하여 IMF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다양한 재정지표 산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3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내용을 기반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를 분석하였다.

GFS의 작성대상인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가 지배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2021회계연도 기준 일반정부의 재정수지는 6.4조원(GDP 대비 $\Delta 0.3\%$)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총자산과 부채는 각각 4,525.0조원(GDP 대비 218.4%)과 1,068.5조원(GDP 대비 51.6%)이다.

가. GFS 재정지표

GFS는 기초 저량에 기증 유량을 반영하여 기말 저량을 도출하는 체계이므로 모든 경제적 거래가 재정통계에 반영되어 재정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GFS를 통해 산출되는 대표적인 재정지표는 다음과 같다.

유형	2021년 규모 (GDP 대비)	산출식	의미	비고
순운영수지	39.4조원 (1.9%)	총수익-총비용	정부운영의 지속가능성	정부운영표
재정수지 ¹⁾	$\Delta 6.4$ 조원 ($\Delta 0.3\%$)	총수익-총지출	금융자원의 제공 여부	정부운영표
순자산	3,456.6조원 (166.9%)	자산-부채	재정활동의 지속가능성	재정상태표
순금융자산	923.3조원 (44.6%)	총금융자산-부채	유동성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재정상태표
확정부채	1,066.2조원 (51.5%)	총부채-주식 및 기타지분과 파생 상품부채	부채의 건전성 (PSDS 기준)	재정상태표

주: 1) GFSM 2001에서는 순융자(net lending), 순차입(net borrowing) 용어를 사용함
출처: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23. 3. 31.

나. 순운영수지 및 재정수지

일반정부의 순운영수지 및 재정수지를 산출하는 정부운영표 주요 계정의 최근 5개 연도 추이는 다음과 같다.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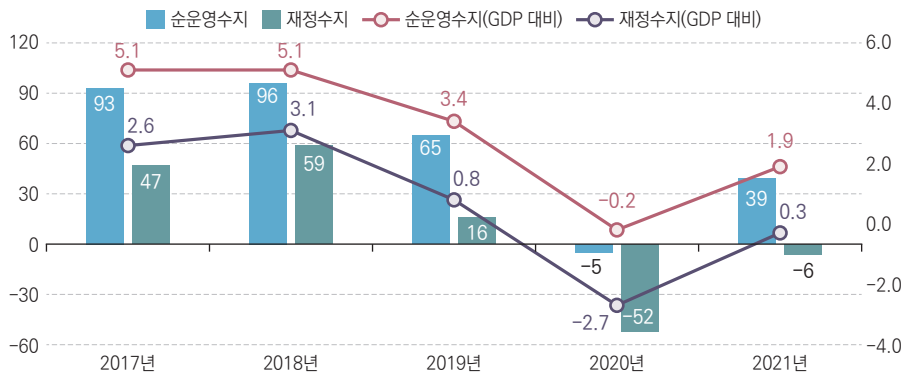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수익(A)	610	7.4	634	3.9	655	3.4	666	1.6	765	15.0
총지출(B = C+D)	563	7.2	575	2.2	639	11.2	718	12.4	772	7.5
총비용(C)	517	7.0	538	4.0	591	9.8	670	13.5	726	8.3
비금융자산의 순취득(D)	46	8.5	37	△19.0	49	30.7	48	△1.7	46	△3.9
순운영수지(A-C)	93	9.6	96	2.8	65	△32.4	△5	△107.1	39	△950.4
재정수지(A-B)	47	10.8	59	23.9	16	△72.2	△52	△420.7	△6	△87.7

출처: 기획재정부, 2017~2021 회계연도의 『한국통합재정수지』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재정수지의 최근 5개 연도 추세를 살펴보면, 2017년과 2018년에는 GDP 대비 2~3% 수준의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2019년 흑자폭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에 따라 2020년에는 적자로 전환되었고, 2021년에는 다시 적자폭이 감소하여 △6.4조원(GDP 대비 △0.3%)을 기록하였다.

그림 1 재정수지 5개 연도 추세(2017~2021)

(단위: 조원, GDP 대비 %)



출처: 기획재정부, 2017~2021 회계연도의 『한국통합재정수지』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 자산과 부채의 추세

일반정부의 재정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 금액의 5개 연도 추세는 다음과 같다.

(단위: 조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순자산	2,747	5.0	2,842	3.5	3,024	6.4	3,126	3.4	3,457	10.6
자산	3,484	4.4	3,603	3.4	3,836	6.5	4,074	6.2	4,525	11.1
비금융자산	2,088	2.5	2,149	2.9	2,220	3.3	2,312	4.1	2,533	9.6
금융자산	1,396	7.5	1,454	4.2	1,616	11.1	1,762	9.0	1,992	13.0
부채	737	2.6	761	3.2	812	6.7	948	16.7	1,068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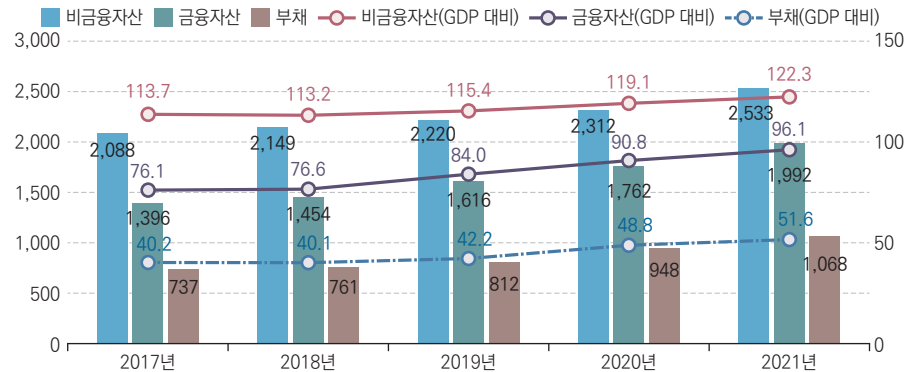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2017~2021회계연도의 『한국통합재정수지』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21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자산이 11.1% 증가하였고, 부채는 12.7% 증가하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상태표상 금융자산의 GDP 대비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2017년 76.1%, 2021년 96.1%), 비금융자산의 GDP 대비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2017년 113.7%, 2021년 122.3%)를 유지하고 있다. 부채 역시 2017~2018년 GDP 대비 40% 수준이었으나 최근 계속 증가하여 2021년에는 GDP 대비 51.6%로 상승하였다.

그림 2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및 부채 5개 연도 추세(2017~2021)

(단위: 조원,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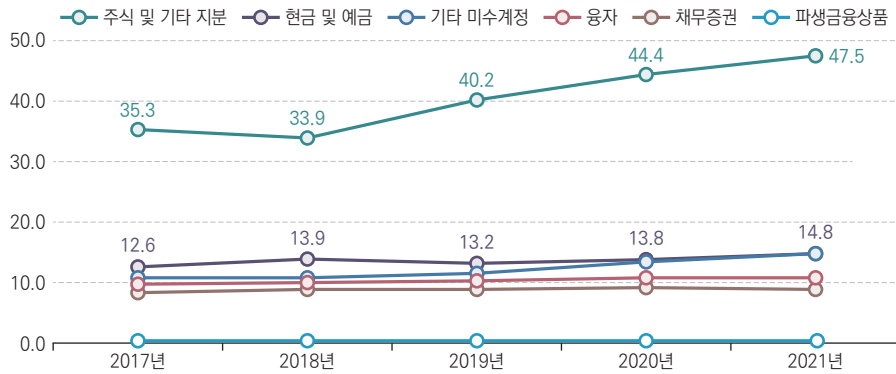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2017~2021회계연도의 『한국통합재정수지』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금융자산의 GDP 대비 비중은 전년 대비 5.4%p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부 항목인 주식 및 기타지분이 3.1%p, 기타미수계정이 1.3%p, 현금 및 예금이 1.0%p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그림 3 금융자산 항목별 증가 추이(2017~2021)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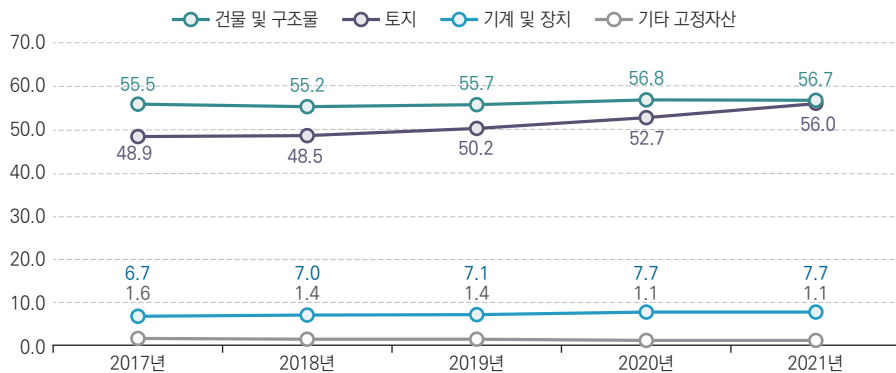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2017~2021 회계연도의 『한국통합재정수지』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21년 비금융자산의 GDP 대비 비중은 전년 대비 3.1%p 증가하였다. 비금융자산 구성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 및 구조물(비금융자산 중 46.3%)의 GDP 대비 비중은 전기 대비 0.1%p 감소하였으나, 토지는 GDP 대비 비중이 3.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비금융자산 항목별 5개 연도 추세

(단위: GDP 대비 %)



출처: 기획재정부, 2017~2021 회계연도의 『한국통합재정수지』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라. 자산과 부채의 변동 원인

GFS 체계에 따르면, 정부 정책으로 인한 모든 경제적 거래가 재정통계 보고서에 집계되므로 자산과 부채의 변동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2021년 자산의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자산 중 비금융자산은 거래(취득-처분-고정자본소비)가 46조원, 보유손익이 149조원, 기타내용변화가 26조원 증가하여 총 221조원 증가하였다.

금융자산은 주로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주식 및 기타지분 취득 등의 거래로 112조원이 증가하고, 주식 및 기타지분 등의 평가로 인한 보유손익이 127조원 증가하였으며, 기타내용변화로 9조원이 감소하여 총 230조원이 증가하였다.

2021년 부채의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부채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 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채발행 등의 거래로 118조원, 평가로 인한 보유손익으로 2조원, 기타내용변화로 1조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121조원이 증가하였다.

표 1 자산과 부채의 통합변동 명세

(단위: 조원)

	2021년 기초	변동 내역(flow)			2021년 기말
		거래	보유손익	기타내용변화	
자산	4,074	158	276	17	4,525
비금융자산	2,312	46	149	26	2,533
금융자산	1,762	112	127	△9	1,992
부채	948	118	2	0	1,068

(단위: 조원)

	2020년 기초	변동 내역(flow)			2020년 기말
		거래	보유손익	기타내용변화	
자산	3,836	128	98	12	4,074
비금융자산	2,220	48	35	9	2,312
금융자산	1,616	81	63	3	1,762
부채	812	133	1	1	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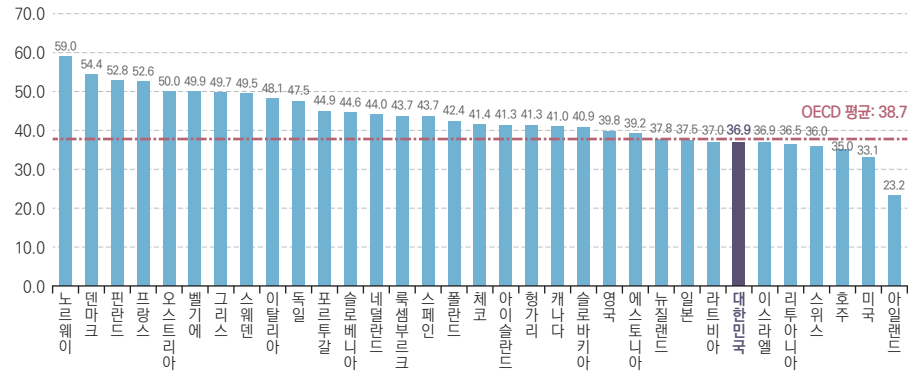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23. 3. 31.

마. 국제 비교

일반정부의 총수익을 OECD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2021년 우리나라 총수익은 GDP 대비 36.9%로 OECD 평균인 38.7%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다.

그림 5 2021년 일반정부 총수익의 국제 비교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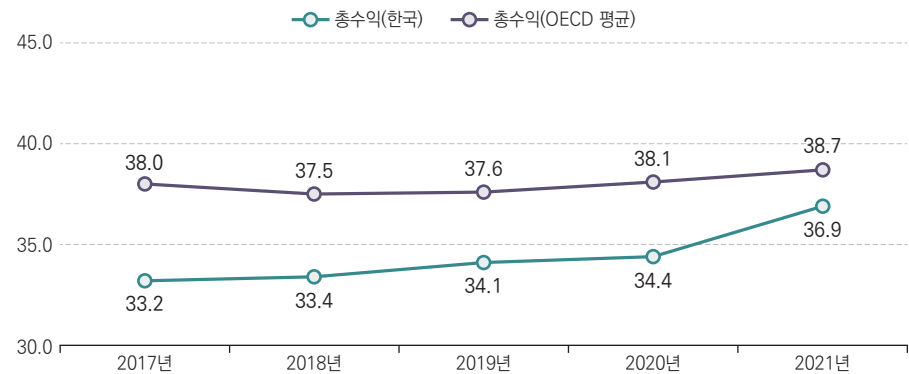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12(2022. 11.),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총수익

우리나라 GDP 대비 총수익은 2017년 33.2%에서 2021년 36.9%로 3.7%p 증가한 반면, OECD 평균은 2017년 38.0%에서 2021년 38.7%로 0.7%p 증가하였다.

그림 6 GDP 대비 일반정부 총수익 5개 연도 추세(2017~2021)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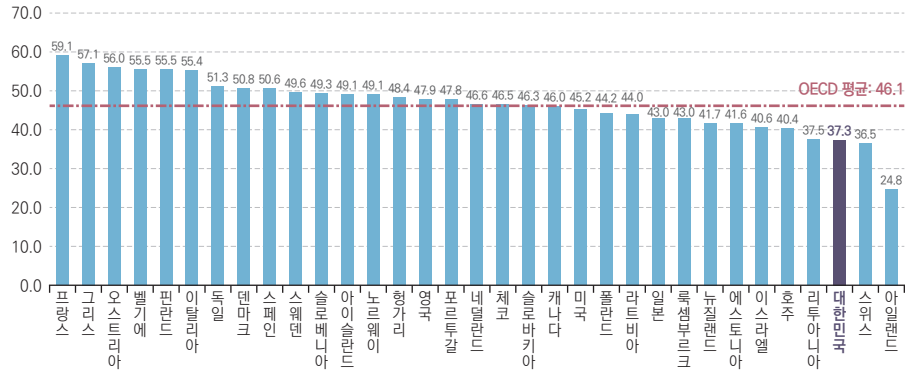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12(2022. 11.),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총수익

2021년 일반정부의 총지출을 OECD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총지출은 GDP 대비 37.3%로 OECD 평균인 46.1%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림 7 2021년 일반정부 총지출의 국제 비교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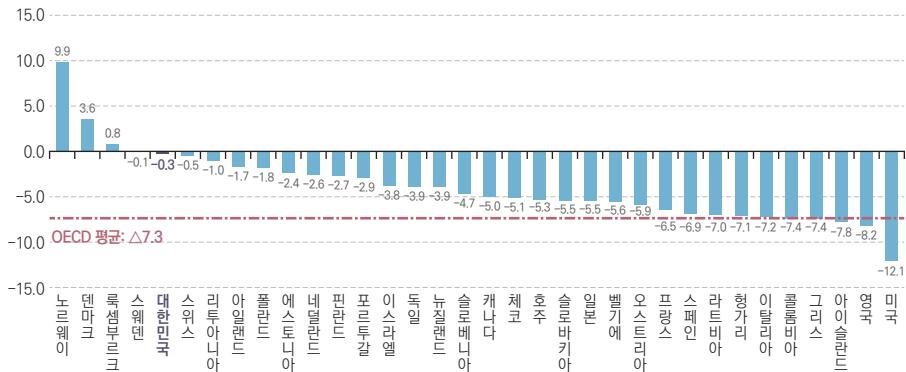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12(2022. 11.),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총지출

2021년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GDP 대비 $\Delta 0.3\%$ 로, OECD 재정수지 평균인 $\Delta 7.3\%$ 대비 낮은 편이다.

그림 8 2021년 일반정부 재정수지의 국제 비교

(단위: GDP 대비 %)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12(2022. 11.)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재정수지

04 『2023 알기 쉬운 재정통계』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재정통계의 관심을 높이고, 통계 산출방식 및 분석 결과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3 알기 쉬운 재정통계』를 발간하였다.

『2023 알기 쉬운 재정통계』는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통계의 개념과 작성대상 정부 범위, 통계 산출과정 등 산출방식 전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또한 2021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결과 분석을 수록하고 있어 우리나라 재정통계 주요 지표의 추이 변화와 국제 비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추가로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도입과정과 이로 인한 효과를 기술하였으며, 최근 GFSM 2014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를 담고 있어 재정통계 활용과 관련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 알기 쉬운 재정통계』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통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게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표 1 『2023 알기 쉬운 재정통계』 목차

PART	목차
1	재정통계 살펴보기
2	재정통계 작성대상 알아보기
3	재정통계 보고서 이해하기
4	재정통계 주요 계정과목 찾아보기
5	우리나라 재정통계 산출 결과 분석하기
부록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

국가회계
재지통계



공익법인회계 동향



- 공익법인 주식 표준안 도입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01 공익법인 주석 표준안 도입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공익법인 주석 표준안 도입방안 전문가 간담회(2023. 6. 1., 서울지방조달청 중회의실)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에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있으며 공시해야 하는 결산서류 중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주석이 있다. 공익법인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뿐 아니라 주석까지 공시해야 하는데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주석 작성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주석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국세청으로부터 ‘공익법인 주석 표준안 도입방안’ 연구용역과제를 수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이 주석을 작성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주석 표준서식과 작성방법 및 사례를 마련하고 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어떤 주석을 작성해야 하는지, 주석 서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등 주석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공익법인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익법인이 주로 작성하는 주석 항목을 조사하여 해당 주석에서 작성해야 할 내용 및 서식을 마련하고, 각 항목에 어떠한 금액을 기재해야 할지에 대한 설명과 작성 사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공익법인 주석 표준안에 공익법인 회계전문가인 변영선 센터장(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과 최호윤 대표(회계법인 더함)의 의견을 듣는 전문가 간담회를 2023년 6월 1일 개최하였다.

변영선 센터장은 공익법인 주석 표준안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의 업무편의뿐 아니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에도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공익법인과 외부 회계감사인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최호윤 대표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이 처음 주석 표준안에 따라 주석 작성을 하는 경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익법인에 학습의 기회가 되어 주석 사항을 미리 챙길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외에도 세부 주석 서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센터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주석 표준안을 보완하여 공익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회계
재지통계



센터 동향



- 센터 연구 진행 동향
- 제4회 KIPF 발생주의회계 국제심포지엄 추진 안내

센터 연구 진행 동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연구TFT(이하 '회계연구TF')는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 범위의 확장을 위해 2023년 신설되어, 다양한 연구주제를 발굴하는 탐색적 시도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먼저 시도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저변 확대를 위해 여러 회계학회에 참여하여 몇 가지 과제를 발표하였다. 정부회계학회(2023. 5. 11.)에서 '재정정보가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양은주)'과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재무적 설명요인 분석(이정미)'이라는 두 가지 연구주제를 발표하였다. 이어 한국회계학회(2023. 6. 26.)에서 '재정준칙이 일반정부 부채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저량-유량 조정을 중심으로(윤영훈)'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하는 『재정포럼』 2023년 6월호 현안분석에 연구과제 수행과정을 수록하였다. 그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과제인 '탄소배출 격차와 사회경제적 요인분석을 통한 사회 불평등 해소방안 연구(이정미)'를 1년간(2022. 5.~2023. 6.) 수행하여 올해 6월 말에 완료하였다.

회계연구TF는 학회 발표 및 협동연구과제 수행과 같은 외부 활동과 더불어 내부의 연구과제 발굴 및 기획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우리 연구원의 기본과제로 선정된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방안(윤영훈·양은주)'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계연구TF의 자체과제로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기후대응 공시 현황 파악과 추진 방향(이정미·임지윤)'을 기획하여 준비하고 있다. 그 외 회계연구의 흐름과 방향성을 점검하고자 '정부회계 연구내용의 변천(윤영훈·임지윤)'을 연구과제로 기획 중이다.

시도하는 연구과제 중 이번 호는 ① 재정준칙이 일반정부 부채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저량-유량 조정을 중심으로(윤영훈), ②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기후대응 공시 현황 파악과 추진 방향(이정미·임지윤), ③ 재정정보가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양은주), ④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방안(양은주·윤영훈)의 4개 연구과제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과 진행 현황을 참조하여 회계연구TF의 연구과제에 관심이 있거나 제안하고자 할 경우 우리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표 1 회계연구TF가 진행 중인 과제 목록(2023년 6월 기준)

NO.	구분	연구과제명	연도	연구자
1	자체 (발표)	재정준칙이 일반정부 부채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 저량-유량 조정 중심으로	2023년 하반기 (한국회계학회: 2023. 6. 26.)	윤영훈
2	자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기후대응 공시 현황 파악과 추진 방향	2023년 하반기	이정미, 임지윤
3	자체 (발표)	재정정보가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2023년 하반기 (정부회계학회: 2023. 5. 11.)	양은주
4	기본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방안: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 발생 원인 및 결산검사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2023년 하반기	양은주, 윤영훈
5	자체 (발표)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재무적 설명요인 분석	2023년 하반기 (정부회계학회: 2023. 5. 11.)	이정미
6	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	2023년 하반기	이정미
7	자체	국가회계기준, 재정통계기준 및 SNA에 따른 정부통계 비교 연구	2023년 하반기	윤영훈
8	자체	정부회계 연구내용의 변천	2023년 하반기	윤영훈, 임지윤
9	중장기	재정사업 원가정보 활용방안 연구	2023년~	양은주
10	중장기	공기업 이익 조정	2023년~	양은주

1. 재정준칙이 일반정부 부채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저량-유량 조정을 중심으로(윤영훈)

국회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다. 현재 주로 논의 중인 재정준칙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 재정수지적자의 감소를 통해 국가채무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다. 그런데 발생주의 재정통계인 일반정부 부채와 재정수지를 기준으로 볼 때, 매년 일반정부 부채의 변동과 재정수지적자 사이에는 저량-유량 조정으로 정의되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재정준칙 도입 시 저량-유량 조정을 통해 일반정부 부채의 변동과 재정수지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저량-유량 조정이 일반정부 부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정수지적자와 체계적인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현재 발표하는 현금주의 재정통계와 달리 GFSM 2001의 기준에 따라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산출한 일반정부 재정통계는 회계기간 말의 저량을 산출할 때 회계기간 초의 저량에서 회계기간 중의 유량을 통해 계산하므로, 일반정부 부채와 재정수지 간의 결합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또한 발생주의 재정통계의 국제 비교가 용이한 특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는 노르웨이, 캐나다, 핀란드 등과 유사하게 연금기금에서 발생하는 누적 재정수지흑자로 인해 누적 저량-유량 조정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 저량-유량 조정이 일반정부 부채와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연금기금의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으며, 재정준칙의 기준으로도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정통계를 통해 계산한 저량-유량 조정에 의해서도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재정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데 있어, 현재 추진 중인 현금주의 기준의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만을 사용하기보다는,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한 일반정부 재정통계 및 이를 통해 계산한 저량-유량 조정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기후대응 공시 현황 파악과 추진 방향(이정미, 임지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IPCC¹⁾ 1차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54개 당사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²⁾을 채택하였다. 1997년 교토의정서를 통해 선진국 위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적용했으나 국가 간 갈등 야기와 불참국 확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다 2015년 파리 협정으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전 지구적 장기온도목표(1.5°C/2°C)³⁾를 설정하고, 가입국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통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올해부터 5년마다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2)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3)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C 상승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 상승 억제 노력을 추구함

파리협정을 기점으로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기후 관련 신규 규제 및 저탄소경제 등의 환경변화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영향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환경·사회적 영향, 거버넌스 등의 비재무정보인 ESG 정보에 대한 글로벌 자본시장의 요구가 증대되었고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에 대한 글로벌 기준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진행과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논의의 배경과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이 도입하여 이행 중인 공시기준의 주요 내용을 탐색·비교하여 우리나라 기업부문과 정부부문의 기후대응 공시에 관한 방향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논의의 배경이 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협상 동향과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이 도입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들의 구성과 주요 특징을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국제기구 사례로, 국내외 주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글로벌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준과 기후 관련 공시기준의 토대가 된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TF(TCFD) 및 IFRS재단이 설립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S1, S2)의 내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여 이행 중인 미국과 유럽의 사례로, 2022년 3월 공표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관련 공시(안)와 같은 해 11월 발표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의 유럽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⁴⁾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본다.

이와 같이 살펴본 기준의 특징과 주요 내용이 민간과 공공에 적용되는 사례를 점검하여 우리나라 기업부문 및 정부부문의 기후대응 공시에 관한 방향성을 파악하고 이후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4)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3. 재정정보가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양은주)

- 이 연구는 국채시장에서 재정정보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기존 기업회계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위험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며, 이러한 회계정보의 질이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 있으나, 국채의 경우 채권자들이 정부의 순자산가치보다는 정부의 국채 상환능력과 상환의지를 평가하므로, 민간 채권시장과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국가 재정자료는 일반정부를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국채시장에서의 국가신인도의 측정치로 국가신용등급과 국가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을 사용함
 - 세계은행과 IMF가 제공하는 국가 재정정보 및 국채시장 자료를 활용
- 저장(stock) 정보인 국가채무와 유량(flow) 정보인 재정적자의 영향을 동시에 분석할 뿐만 아니라, 스톡-플로우 조정(Stock-Flow Adjustment)값의 영향도 추가적으로 분석

4.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방안(양은주, 윤영훈)

- 이 연구는 발생주의 도입 이후 국가재무제표에서 발생하는 전기 오류수정을 분석하여 국가회계의 신뢰성 제고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회계품질이 높을수록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국가회계정보의 유용성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다만, 발생주의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난 현재 국가재무제표의 회계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는 반면, 전기 오류수정의 경우 오류 총액으로만 공시되어 이해관계자들에게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왜곡된 정보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상세한 분석이 필요
- 국가재무제표상의 회계오류를 유형화하여 유형별 오류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검토

제4회 KIPF 발생주의회계 국제심포지엄 추진 안내

주 제: 공공부문의 기후변화 관련 ESG 보고의 현황 및 쟁점
일 시: 2023년 11월 1일(수) 14:00~17:20
장 소: 은행회관(서울)
주 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공공기관연구센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11월 1일에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4회 KIPF 발생주의회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각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정부 소비지출에서의 탄소발자국에 관한 정보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가운데, 체계적이고 비교가능한 공공부문의 기후변화 관련 ESG 보고기준과 보고 촉진을 위한 세부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기획하였다.

'공공부문의 기후변화 관련 ESG 보고의 현황 및 쟁점'을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2개의 발표 세션과 토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 세션 '공공부문 기후변화 관련 ESG 보고기준 개발'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ESG 보고기준 논의의 배경과 공공부문의 ESG 보고기준 개념체계 및 미국의 ESG 보고기준 제정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공공부문의 체계적이고 비교가능한 ESG 보고기준 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뒤이은 두 번째 발표 세션에서는 공공부문의 기후변화 관련 ESG 보고 촉진 방안과 ESG 보고 사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기업·공공기관의 ESG 보고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과 에너지, 금융 및 인프라 등 주요 분야별 공공부문의 기후 관련 ESG 보고 사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패널 토론에서는 기후 관련 ESG 보고기준 마련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기준 제정기관과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글로벌 공공부문 기후변화 관련 ESG 보고기준 마련과 이행을 위한 세부 정책 방향 및 수단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 심포지엄은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을 위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기후 관련 ESG 정책 추진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기후 관련 ESG 보고기준 마련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제4회 KIPF 발생주의회계 국제심포지엄 프로그램

시 간	구 분	주요 내용
14:00~14:30 (30분)		개회식
		[세션 1] 공공부문 기후변화 관련 ESG 보고기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공부문 기후 관련 ESG 보고를 위한 개념체계(2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제)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공공부문 실체 및 보고실체 ※ Prof. Andreas Bergmann (Zurich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14:30~16:10 (100분)	발표 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미국 공공부문의 기후 관련 ESG 보고 현황 및 시사점(2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f. Scott Showalter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세션 2] 공공부문 기후변화 관련 ESG 보고 촉진 정책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미정) 공공부문 기후 관련 ESG 보고 촉진 방안(2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자 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미정) 분야별 공공부문 기후 관련 ESG 보고 사례(2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자 미정
16:20~17:20 (60분)	토론 세션	패널 토론 및 Q&A



세미나



- 2023년 한국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발표
- 국제정부회계비교연구네트워크 주최 'CIGAR Network 2023 컨퍼런스' 발표
- 2023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 제2차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
「국내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의 이해」

2023년 한국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발표



가. 개요

대주제: 한국회계학회 50년 성과와 미래

일 자: 2023년 6월 26일(월)~27일(화)

장 소: 라마다프라자 제주

주 최: 한국관리회계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회계정책학회, 한국회계학회

주 관: 한국회계학회

정부회계위원회 세션

[사 회] 조형태 교수(홍익대)

[발표 1]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진태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토론〉 김창화 팀장(기획재정부)

[발표 2] 공공부문 자산손상 회계이슈에 관한 연구(박윤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 3] 재정준칙이 일반정부 부채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 저량-유량 조정을 중심으로(윤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나. 발표 및 토론 요약

주요 발표 내용

발표 1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진태호 국가회계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16일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을 공표하였다. 국가결산보고서의 개편은 ‘국가결산의 유용성 제고’를 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재무제표 기반의 결산 분석 기능을 확대하고, 국제 흐름에 부합하면서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결산서 구성을 과제로 설정하였다. 또한 재무제표의 간소화 및 분류체계 개편, 현금흐름표 신설, 주석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재정상태표는 공시과목 102개, 8페이지에 달하던 기존의 재정상태표를 한 페이지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시 계정과목을 30여 개로 간소화하였으며, 축소된 각 계정과목의 세부 사항은 주석에서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계정과목을 장·단기 구분 없이 통합하고, 자산(금융자산, 유·무형자산, 기타자산) 및 부채(차입부채, 총당부채, 기타부채)의 중간단계 구분을 신설하여 재정상태표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시방법을 재편하였다.

둘째, 국가 재정운영표를 분야별·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개편하였다. 현재의 국가 재정운영표는 부처별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국가회계실체 및 중앙관서의 재정운영표는 각 프로그램의 사업별 원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예산의 구조상 프로그램의 상위 항목이 분야이므로, 15대 예산 분야별 재정운영표를 통해 중앙관서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연계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필수보충정보로 제공되고 있는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주 재무제표로 개편하면서, 수익(국세수익, 이전수익, 국가운영수익) 및 비용(이전비용, 국가운영비용)의 분류를 간소화하였다.

셋째, 국가 현금흐름을 운영·투자·재무활동으로 집계하는 현금흐름표를 도입하였다. 현재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총잉여금과 재정운영결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가 필수보충정보로 공시되고 있으나, 각 활동의 현금흐름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어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민간과 동일하게 국가 활동을 운영·투자·재무로 구분하여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현금흐름표를 국가회계법령상 재무제표에 포함하였다. 운영활동은 정상적인 정부 운영에 따른 현금유입 및 유출을 말하며, 투자활동은 투자증권, 유형자산 등 효익 창출 또는 미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유출입, 재무활동은 국채발행, 차입 등에 따른 현금 유입 및 국채상환, 차입금 상환에 따른 현금 유출을 말한다.

넷째,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를 주석으로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앞서 재무제표 간소화에 따라 축소된 계정과목별 세부 정보를 주석을 통해 상세히 공시하는 방향으로 주석체계를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8개 항목의 주석을 20여 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정과목별 상세 내용, 주요 회계처리 등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3년 하반기까지 국가회계법령을 개정하고, 이후 2024년까지 관련 예규를 개정하여 국가결산보고서 개편안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서부터 작성 및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주요 토론 내용

지정토론 김창화 국가결산체계개편팀장, 기획재정부

국가결산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는 크게 국가회계법령 개정과 디브레인(dBrain) 시스템 개편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국가회계법령 개정의 경우, 기존의 「국가회계법」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상 재무제표가 현금흐름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전체 58개 중 개정이 소요되는 24개의 관련 조문과, 「국가회계예규」의 관련 회계처리지침 등을 신설 및 개정할 예정이다.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재정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디브레인 시스템 또한 결산체계 개편안이 재무제표 작성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2개년도(2024~2025)에 걸쳐 개편할 예정이다. 재무제표 개편안에 따라서 계정과목을 신설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디브레인 개편의 핵심으로 볼 수 있으며, 시스템 개편 1단계에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와 관련 사항을 개발할 예정이며, 2단계에서는 기타 주식 관련 사항 개발과 시스템의 안정화 등 전체 내용의 수정 및 보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시스템을 전면 오픈하여 2025회계연도 개편 국가결산보고서가 차질 없이 작성되고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자유토론 김광윤 명예교수, 아주대학교

발생주의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게 지나고 국가부채를 산출하고 있지만, 행정부는 재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표 등을 국가부채가 아닌 국가채무만을 대상으로 산출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국제 비교 목적으로 산출하는 일반정부 부채(D2)나 재무제표상 국가부채와 달리 국제 비교에도 사용할 수 없고, 연금부채 등이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가가 부채는 관리하지 않고 채무만 관리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행정부와 입법부 등이 노력하여 국가의 재정을 보다 신뢰성 있는 지표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발표 2 공공부문 자산손상 회계이슈에 관한 연구(박윤진 재정통계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근 코로나19 영향,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 공공성 확대 등에 따라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공공기관이 많아지고 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영업손실이 발생해도 요금인상의 결정권한이 없어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지속된 영업손실은 외부 회계감사 시 유·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문제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자산손상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자산손상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발표에서 공공부문의 자산손상 회계이슈를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한지 검토하였다.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자산손상 관련 회계기준 마련 필요성 검토를 통해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고려하여 별도의 손상규정 마련 및 IPSAS의 비현금창출자산 개념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공공기관마다 사업특성(공공성, 사업구조)이 모두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자산손상 관련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각 기관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발표 3**재정준칙이 일반정부 부채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저량-유량 조정을 중심으로**
(윤영훈 국가회계연구TFT 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회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으며, 현재 주로 논의 중인 재정준칙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 재정수지적자의 감소를 통해 국가채무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재정준칙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나 일반정부 또는 공공부문의 채무 및 재정수지의 수준에 수치적인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재정정책에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제약을 의미한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재정의 체계를 강화하고,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며, 정부 재정정책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정부의 채무 저량(stock)의 변동은 재정수지적자인 유량(flow)에서 유래된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위의 항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되며, 채무의 증가가 재정수지적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저량-유량 조정(stock-flow adjustment: SFA)으로 정의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대상이 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부의 재정운영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첫째, 재정수지 산출의 포괄범위로 중앙정부만을 포함하고 지방정부를 포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있어, 일반정부 단위의 세입과 세출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재정수지를 산출할 때 현금주의를 기반으로 현금의 수입 및 지출 단계에서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기 때문에 미래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우려가 존재한다. 셋째, 국가채무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공기관 관리기금 등이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정부의 포괄범위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먼저 현재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대상이 되는 지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재정안정성에 대한 국제 비교가 가능한 발생주의 기준의 일반정부 부채와 일반정부 재정수지의 현황 및 특징을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표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부터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의 재정통계를 산출하여 현금주의 재정통계와 구분하여 발표한다.

일반정부 재정통계는 산출 대상 정부의 범위가 동일하며, 거래의 경제 유량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기간 말의 저량을 산출할 때 회계기간 초의 저량에서 회계기간 중의 유량을 통해 계산하므로, 일반정부 부채와 재정수지 간의 결합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일반정부 부채와 재정수지의 관계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가 재정지표를 관리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일반정부 부채의 변동과 재정수지의 차이를 의미하는 저량-유량 조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분석한다. 저량-유량 조정의 정의 및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저량-유량 조정 관련 현황을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르웨이, 캐나다, 핀란드 등과 유사하게 연금기금에서 발생하는 누적 재정수지흑자로 인해 누적 저량-유량 조정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준칙의 도입과 저량-유량 조정이 일반정부 부채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재정준칙의 도입 시 저량-유량 조정을 통해 일반정부 부채의 변동과 재정수지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저량-유량 조정이 일반정부 부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정수지적자와 체계적인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정부 부채와 재정수지적자의 수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을 검토할 때, 둘의 차이인 저량-유량 조정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제정부회계비교연구네트워크 주최 'CIGAR Network 2023 컨퍼런스' 발표

가. 개요



- 주 제: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에 관한 개념체계 논의
- 일 시: 2023년 6월 29일(목) 16:00~17:30
- 장 소: 일본 와세다대학교 국제회의장, 온라인 참여
- 발표자: 박성진(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국제정부회계비교연구네트워크¹⁾는 2023년 6월 28~30일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CIGAR 2023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대면과 온라인 참여를 병행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적 책임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코로나19,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회계의 역할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박성진 소장은 이 컨퍼런스에서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에 관한 개념체계 논의'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재무보고 목적, 정보이용자의 동질성 및 정보의 시간 범위의 측면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무회계기준을 비교하고, 이어 민간부문의 재무보고체계와 지속가능성 보고체계를 비교하여, 민간부문이 논의 중인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을 참고하여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1) 국제정부회계비교연구네트워크(Comparative International Governmental Accounting Research: CIGAR Network)

특히, 재무적 중요성(financial materiality)과 영향 중요성(impact materiality)의 상이한 가치체계의 반영 정도와 재무 및 비재무정보를 하나의 틀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통합보고(integrated reporting)에 관하여 다양한 입장을 취하는 민간의 지속가능성 보고체계들을 병렬적으로 비교하여 현재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의 지속가능성 보고체계 제정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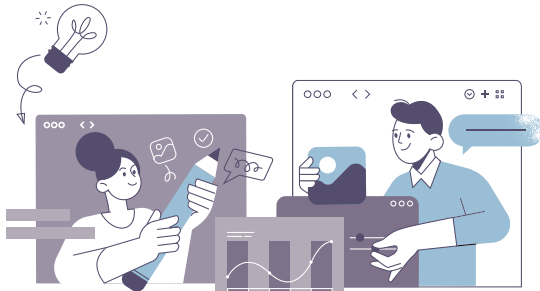
Do We Really Need Public-Sector-Specific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Sung-jin Park, Ph.D./CPA
Executive Director, GAIFSC
Associate Professor of Accounting, IUSB

Ch.3. Conceptual Distinction between Financial and Sustainability Reporting

Toward Sustainability Reporting

The diagram illustrates the conceptual distinction between Financial Reporting and Sustainability Reporting. It shows two overlapping areas: Financial Reporting (left) and Sustainability Reporting (right). The intersection is labeled 'Toward Sustainability Reporting'. The diagram is divided into three horizontal categories: Climate-related (top), General Sustainability (middle), and Impact Sustainability (bottom). Various reporting standards are mapped to these categories: IFRS (S1/S2) and US GAAP are in the bottom-left; SASB, ISSB, and IASB are in the bottom-middle; TCFD, GRI, and UN SDGs are in the bottom-right. The top-left area includes Climate-related standards like IFRS S1/S2, US GAAP, and SASB. The top-middle area includes General Sustainability standards like SASB, ISSB, and IASB. The top-right area includes Impact Sustainability standards like TCFD, GRI, and UN SDGs.



2023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가. 개요

대주제: 격동기의 정부회계 및 재정정보의 역할

일 자: 2023년 5월 11일(목)~12일(금)

장 소: 전라남도 여수 엑스포 유타프 마리나 호텔 & 리조트

주 최: 한국정부회계학회

제1분과 <국가회계 세션>

[발표 1] 재정정보가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양은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 2]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재무적 설명요인 분석
(이정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나. 주요 발표 내용

발표 1 재정정보가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양은주 초빙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이 연구는 국채시장에서 재정정보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채권이란 주기적으로 고정적인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 최종적으로 원금을 반환하는 상품을 말하는데, 풋옵션과 유사하게 그 상환한도가 원금으로 제한된다는 특징을 지님
- 기존 기업회계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위험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며, 이러한 회계정보의 질이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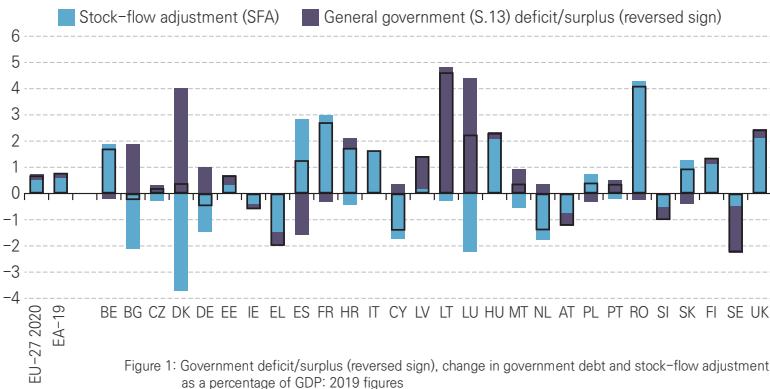
- 국채의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정부의 순자산가치보다는 정부의 국채 상환능력과 상환의지를 평가하게 되므로, 민간 채권시장과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국채를 평가할 때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데, 정치적 위험, 경제성장,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시경제적 변수와 국민 1인당 소득, 재정여력, 과거 파산이력 등의 국가별 특징이 이에 해당함
- 국채시장에서의 국가신인도 측정치로 국가신용등급과 국가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을 사용함
- 국가신용등급은 S&P, Fitch, Moody's와 같은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기관들은 다양한 정보를 통해 국가의 부채상환능력과 의지를 평가
- 국가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 프리미엄은 시장참여자들이 평가한 국가의 신용위험을 반영
- 국가신용등급은 대개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며, 변동성이 적고 일시적인 변동보다는 본질적인 요소에 가중치를 두고 평가를 내리는 반면, CDS 프리미엄은 국가신용등급에 비해 더욱 신속하고 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참여자들의 평가에 의한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음

그림 1 각 국가의 평균 국가신용등급 현황

Index	S&P	Fitch	Moody's	Investment Grade	Example
21 ↓ 1	AAA	AAA	Aaa	Prime	CHE, DEU, LIE, LUX, NOR
	AA+	AA+	Aa1		
	AA	AA	Aa2	High Grade	AUS, CAN, FRA, GBR, JPN, USA
	AA-	AA-	Aa3		
	A+	A+	A1	Upper Medium Grade	CHL, CHN, CZE, ESP, ITA, KOR, PRT, SAU
	A	A	A2		
	A-	A-	A3		
	BBB+	BBB+	Baa1	Lower Medium Grade	HUN, LTU, MEX, MYS, POL, THA, ZAF
	BBB	BBB	Baa2		
	BBB-	BBB-	Baa3		
	BB+	BB+	Ba1	Speculative	BGD, BRA, COL, GRC, IND, RUS, TUR
	BB	BB	Ba2		
BB-	BB-	Ba3			
B+	B+	B1	Highly Speculative	ALB, BOL, GHA, IRN, SUR, RWA, VNM	
B	B	B2			
B-	B-	B3			
CCC+	CCC+	Caa1	Substantial Risk	ARG, CUB, ECU, IRQ, VEN	
CCC	CCC	Caa2			
CCC-	CCC-	Caa3			
CC	CC	Ca	Extremely Speculative		
C	C	C			

- 이 연구는 저량 정보인 국가채무와 유량 정보인 재정적자의 영향을 동시에 분석할 뿐만 아니라, 스톡-플로우 조정(Stock-Flow Adjustment, 이하 'SFA')값의 영향도 추가적으로 분석
- SFA란 전기 대비 당기 국가채무의 변화량과 당기 재정적자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양수의 SFA는 국가채무가 연간 재정적자보다 더 많이 증가함을 의미함
- 정부부채는 과거의 재정적자가 누적된 값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한 특정연도에서 전년 대비 당기 국가채무의 변화량이 당기 재정적자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
- 이러한 SFA는 금융자산의 순취득, 통계적 불일치로 인한 조정 등의 요인으로 발생

그림 2 2020회계연도 기준 해외 주요 국가의 SP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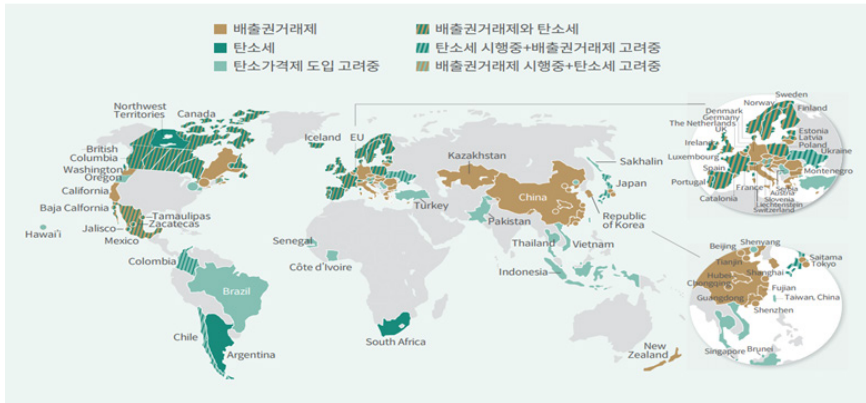


- 실증분석 결과, 국가채무정보와 재정적자정보 모두 국채시장에서 국가신인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신용등급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 국가채무가 증가할수록 신용등급이 낮아지며, 재정적자가 증가할수록 신용등급이 낮아짐
- 반면, SFA가 증가할수록 국가신용등급은 높아지는 결과를 보임
- CDS 프리미엄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 국가채무가 증가할수록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재정적자가 증가할수록 CDS 프리미엄이 높아짐
- SFA가 증가할수록 CDS 프리미엄은 낮아지는 결과를 보임

발표 2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재무적 설명요인 분석
(이정미 선임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구 개요

- (배경) 최근 각국은 탄소중립 목표 및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배출에 가격을 설정하여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유인정책 수단으로 다양한 탄소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음
- 온실가스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을 부여하고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논의



출처: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1; 태정림, 「탄소가격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주요국을 중심으로-」, 나보포커스, 제43호, 국회예산정책처, 2022. 4.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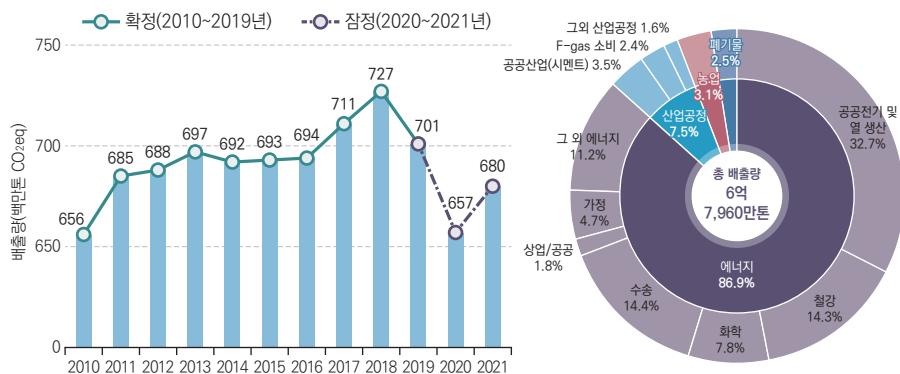
- (목적) 이 연구는 정부의 탄소배출량 감축 정책수단인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탄소배출 행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할당량의 비율과 운영목표를 달리한 거래제 시기별 정책효과 및 산업별 효과를 검증하고자 함
- (선행연구의 흐름) 정부가 기업에 탄소배출에 대한 가격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함에 따라 기업들은 탄소배출을 재무적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어 기업의 수익성에 변화가 수반되고, 배출권 비용의 내재화를 위한 탄소효율성 증대 노력을 기울여 탄소배출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연구를 비롯하여 해외 연구도 탐색적·시도적 연구가 시행 중임

- 신동현(2019)은 탄소효율성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검증
- 모정윤(2022)은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탄소집중도(배출량/매출액)를 낮춘다고 보고
- In et al.(2019)은 탄소효율성과 기업 수익률의 관계를 검증
- Gallego-Álvarez et al.(2015)은 탄소배출량과 기업의 재무 및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Lee et al.(2015)은 탄소배출량과 기업의 환경성과 및 기업의 재무성과 사이 관계 분석

■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제도와 현황

- (현황)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8년 정점을 지나 하락 추세이며, 분야별로는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5% 이상이며, 그 외 가정과 상업/공공은 각각 4.7%와 1.8%를 차지하고 있음
- 산업별로는 전기열생산의 발전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가 탄소 다배출 산업으로 포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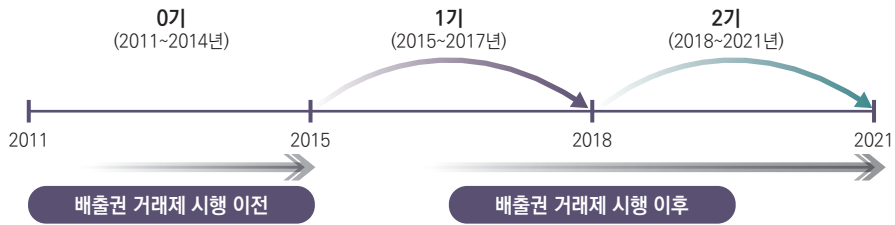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 국가 총 탄소배출량 추이와 분야별 현황



출처: 환경부,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공개」, 보도자료, 2022. 6. 28.

-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시기별로 정책목적과 할당 비중을 달리 적용하여 시행하였는데, 제1기는 제도의 안착기로 할당량의 100%를 전량무상으로 지급하였고, 제2기는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시기로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를 유상으로 할당하였고, 제3기는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시기로 배출권의 10%를 유상할당함
-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 시행되었고 사용된 자료는 2011~2021년이므로, 분석에서는 2011~2014년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전의 0기, 2015~2017년 3년간 거래제 시행 1기, 2018~2021년 4년간 거래제 시행 2기로 설정함

그림 2 배출권 거래제 적용 시점



■ 분석 결과

- (자료 설명)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정보와 기업별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NICE KISVALUE 기업 재무정보를 결합하여 활용
- 866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기업별,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패널자료 구성
- (모형 설명)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생산활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목표 추정계수를 β_1 , β_2 , β_3 으로 설정
- β_1 과 β_2 는 매출액에 따른 배출권 시행제도 1기와 2기 기업활동에 따른 탄소배출 계수의 변화 효과
- β_3 은 배출권 시행 이전 기간 동안 기업활동에 따른 탄소배출 계수

- $d1, d2$ 는 시기별 효과를 통제

$$\ln carbon_{i,t} = \alpha + \beta1d1 \times \ln sales_{i,t} + \beta2d2 \times \ln sales_{i,t} + \beta3 \ln sales_{i,t} + \lambda1d1 + \lambda2d2 + \delta x_{i,t} + \epsilon_{i,t}$$

여기서 $carbon_{i,t}$ 는 기업 i 의 연도 t 의 탄소배출량(CO_2 -eq)이며, $sales_{i,t}$ 는 기업 i 의 연도 t 의 매출액, $d1, d2$ 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1기, 2기 더미, $x_{i,t}$ 는 기업 i 의 연도 t 의 운영효율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변수이고, $\epsilon_{i,t}$ 는 기업 i 의 연도 t 의 통상적인 오차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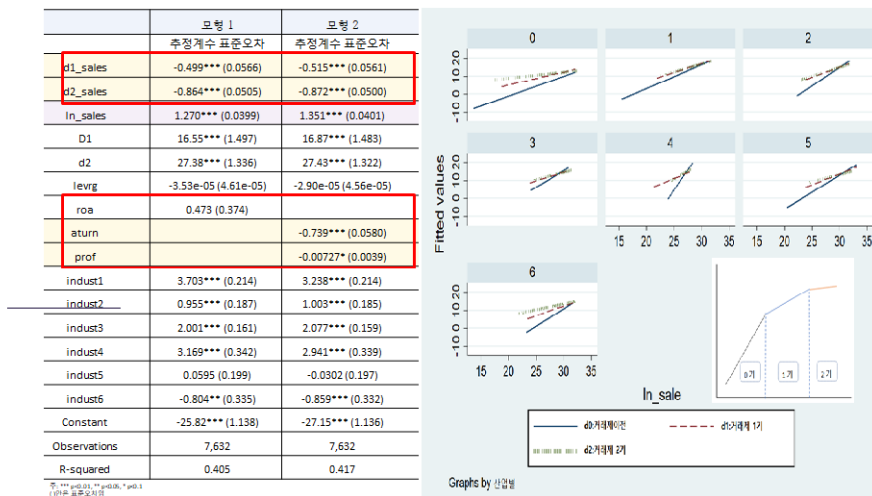
- 추가적으로 탄소가격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두 품분석을 이용함(총자산수익률 = 순이익률 × 자산회전율)

■ 결과 분석

• 모형분석 결과

- 탄소배출권 거래제 1기와 2기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매출액의 변동효과만을 추정 한 결과는 음수로 나타나서, 배출권 거래제 시행이라는 정부의 신호효과가 반영 되어 탄소배출 증가속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
- 거래제 1기보다 2기에 변동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서 유상할당이 포함된 2기에 감축효과가 더 크므로, 향후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시사

그림 3 기본 모형의 분석 결과와 거래제 시행 전후의 증감속도 변화



- 산업별로 배출권 거래제 1, 2기의 효과를 분해 분석한 결과, FE 모형에서 철강과 시멘트산업은 1기, 2기 모두 계수가 음(-)으로 추정되어 감축효과를 나타냈으나, 화학산업은 1기에만 감축효과를 나타냄. 아울러 디스플레이산업도 5~10%의 유의수준에서 감축효과를 보여줌

표 1 산업 분야에 따른 모형 추정 결과(FE)

OLS	-	발전	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외 변수	
d1_sales	-0.297*** (0.0495)	-0.0981 (0.180)	-1.004*** (0.236)	-0.567*** (0.202)	-1.476** (0.538)	-0.183 (0.214)	-0.515** (0.259)	levrg	-2.782-05 (4.5e-05)
d1_sales	-0.777*** (0.0454)	0.187 (0.174)	-0.774*** (0.218)	-0.217 (0.187)	-1.609** (0.519)	-0.172 (0.198)	-0.437* (0.251)	aturn	-0.729*** (0.0574)
ln_sales	1.439*** (0.0964)	0.0220 (0.177)	-0.488 (0.486)	-0.689* (0.397)	0.176 (0.592)	0.735* (0.416)	0.464 (0.503)	prof	-0.00453 (0.00389)
d1	10.72*** (1.304)	1.002 (4.812)	26.47*** (6.212)	13.76** (5.460)	37.65** (14.11)	4.383 (5.788)	14.49** (7.065)	constant	-22.93*** (1.221)
d2	24.88*** (1.198)	-7.829* (4.714)	19.41*** (5.756)	3.633 (5.078)	40.88*** (13.66)	3.717 (5.417)	13.83** (6.914)		



제2차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

「국내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의 이해」



주 제: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의 이해

일 시: 2023년 4월 6일(목) 14:00~16:30

발표자: 대구대학교 회계학과 정준희 교수(한국회계학회 ESG위원장)

장 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관 8층 중회의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3년 제4회 KIPF 발생주의회계 국제심포지엄의 주제를 ‘공공부문의 기후변화 관련 ESG 보고의 현황 및 쟁점’으로 정하고 관련 연구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차 세미나에서 새롭게 제정되는 국제기준인 ‘IFRS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S1과 S2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 2차 세미나에서는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의 실무적용 현황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대구대학교 회계학과 정준희 교수를 연사로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하였다.

주요 발표 내용

가. 서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개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서 나왔다. 과거 NGO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는 기업의 공공복지 서비스 등의 사회적 투자와 노동운동과 같은 사회적 활동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및 일부 공공기관을 제

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CSR에 관심이 높지 않았고, 오히려 기업 지배구조 규제 등에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의 등장과 2015년 파리협정 채택,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ESG에 대한 관심은 대폭 증가하였다.

2015년 12월 12일, 196개국 대표가 파리협정을 채택하여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제한하자는 전 지구적 장기온도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은 국가결정기여(NDC)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파리협정 채택 이후, 기후변화 관련 정보는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기후 관련 정보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재무제표를 통한 기업 가치 판단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정부 및 규제 당국은 기업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인 이중중요성(double materiality) 관련 ESG 정보를 요구하나, ESG 열풍의 주된 원인은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인 단일중요성(single or financial materiality)에 있다. 이 같은 두 가지 중요성의 차이를 구분 없이 사용하여 ESG 실체가 모호해지고 방향성을 상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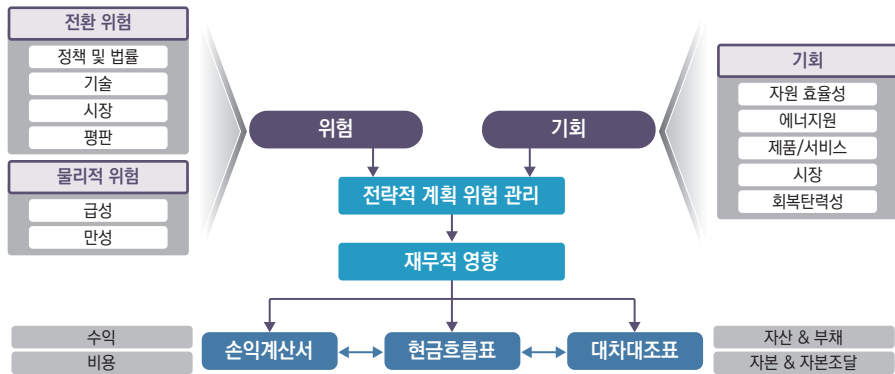
나. 지속가능성 공시 글로벌 기준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TF(TCFD)¹⁾

2015년 4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에 금융부문에 기후변화 관련 이슈 반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여 같은 해 12월, 마이클 블룸버그를 위원장으로 한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TF(TCFD)가 출범했고, 32명의 금융 및 비재무정보 전문가가 이에 참여하였다. 2017년 7월, FSB는 독일 본에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에서 TCFD 권고안을 발표하여 다음의 그림과 같이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의 영향을 재무적으로 측정하여 공시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설정의 4개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11개 항목의 공시권고사항을 제안하였다.

1)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TF(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그림 1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의 기업가치에 대한 재무적 영향 경로



출처: TCFD, "Final Report: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2017. 6., p. 8., <https://assets.bbhub.io/company/sites/60/2021/10/FINAL-2017-TCFD-Report.pdf>

TCFD는 상기와 같이 재무적 영향 경로를 제시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역할을 강조하였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금융기관은 자금 지원을 통해 고탄소 배출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현재는 많은 금융당국이 자금중개자인 은행이 고탄소 사업의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지 사회적 가치 측면이 아니라, 은행의 리스크가 확대되는 재정건전성과도 직결된다.

TCFD는 IFRS S2(기후 관련 공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 및 EU 유럽지속가능성공시표준(ESRS) E1 등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초석이 되었다. G20 국가를 중심으로 TCFD 의무 도입 및 관련 법안이 마련되었다. 대부분의 국가는 금융 및 자본시장 정책 당국이 이를 주도하나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주도하는 차이가 있다.



EU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EU는 2018년부터 기업의 비재무정보공개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²⁾을 시행해 왔으나, 표준화된 공시기준의 부재로 비교가능성 및 신뢰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2021년 4월에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초안을 제안하였고 2022년 11월 28일 EU 이사회가 최종 승인하여 2023년 1월 5일 최종 효력이 발생하였다.

CSRD는 공시 적용 대상 기업 범위와 공시항목을 확대했다. 먼저 기업 범위로 기존 NFRD 보고지침이 적용되는 상장회사에서 매출액 4천만유로 이상, 자산총액 2천만유로 이상 및 직원 수 250명 이상 중 2가지를 충족하는 대기업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경영보고서에 공시해야 할 정보는 8가지로, 사업 모델 및 전략, 지속가능성 관련 기한별 목표 및 달성 진전사항,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련한 행정·경영·감독 조직 구성원의 역할,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련한 정책, 지속가능성 이슈와 연계된 인센티브 제도 정보, 지속가능성 이슈 관련 실행 중인 실사 절차,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위험 및 대응 방안, 사업 모델·전략·위험 관련 공시지표 등이 있다.³⁾

CSRD를 이행하고 비교가능성을 증진하고자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2022년 11월, 지속가능성 표준안으로 유럽지속가능성공시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의 최종안을 공개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공시할 정보의 범위 및 기준을 명시하였다.

2) 유럽 비재무정보공개지침은 직원 수 500명 이상의 대기업에 적용되며,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직원 대우(treatment of employees), 인권 존중, 반부패, 뇌물, 기업 이사회의 다양성(diversity on company boards)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함.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ATAG/2022/738177/EPRS_ATA\(2022\)738177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ATAG/2022/738177/EPRS_ATA(2022)738177_EN.pdf), 검색일자: 2023. 6. 26.

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21PC0189&from=EN>, Article 19a, 검색일자: 2023. 6. 26.

ESRS의 첫 번째 기준은 아래의 <표 1>과 같이 일반 요구사항(ESRS 1) 및 일반 공시(ESRS 2) 등의 공통표준과 환경(ESRS E1~5), 사회(ESRS S1~4) 및 지배구조(ESRS G1~2) 등의 주제별 표준으로 구성된다. ESRS는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의 성장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기업이 사람과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이중중요성(double materiality)’을 강조하였다.

표 1 ESRS의 첫 번째 기준

구분	지표
공통 표준	ESRS 1 일반 요구사항
	ESRS 2 일반 공시
환경	ESRS E1 기후변화
	ESRS E2 오염
	ESRS E3 물 및 해양자원
	ESRS E4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ESRS E5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주제별 표준	ESRS S1 기업자체의 인력
	ESRS S2 가치사슬 내 근로자
	ESRS S3 지역사회
	ESRS S4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지배구조	ESRS G1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ESRS G2 비즈니스 수행

출처: EFRAG, "Glimpse into draft ESRS 1 General requirements," <https://www.efrag.org/lab6#subtitle4>, 검색일자: 2023. 6. 26.

SEC 기후 관련 정보 공시기준 초안 발표

2022년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TCFD’와 ‘GHG 프로토콜’을 토대로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안을 공개하여 미국 또는 외국 국적의 SEC 등록기업이 기후 관련 리스크에 관한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2023회계연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점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Scope 3은 2024년부터 중요한 수준일 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⁴⁾

4)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https://www.sec.gov/files/33-11042-fact-sheet.pdf>, 검색일자: 2023. 6. 26.

표 2 SEC 온실가스 배출 공시 인증

기업 규모	공시 개시연도		요구되는 인증 수준	
	Scope 1 & 2	Scope 3	제한된 인증	합리적 인증
Large Accelerated Filter	2023회계연도 (2024년 공시)	2024회계연도 (2025년 공시)	2024회계연도 (2025년 공시)	2026회계연도 (2027년 공시)
Accelerated Filter	2024회계연도 (2025년 공시)	2025회계연도 (2026년 공시)	2025회계연도 (2026년 공시)	2027회계연도 (2028년 공시)
Non Accelerated Filter				
Small Reporting Companies	2025회계연도 (2026년 공시)	면제	면제	면제

출처: SEC, "Proposed Rule," 2022. 3., pp. 45-46; pp. 215-216; p. 290., <https://www.sec.gov/rules/proposed/2022/33-11042.pdf>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IFRS 재단은 투자자들의 요구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설립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S1, S2)⁵⁾을 발표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6월에 최종 기준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부터 일부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기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2025년부터 상장 대기업을 중심으로 IFRS S1, S2를 도입할 예정이다.

표 3 지속가능성 공시 글로벌 기준

내용	TCFD	IFRS S2	SEC	CSRD(ESRS)
기후 보고공시 표준 개발 현황	최종 확정	2023년 6월	확정	개정안 합의
강제성	자율 공시	미정	의무 공시	의무 공시
정보의 주요 이용자	투자자	투자자	투자자	다중이해관계자
중요성(materiality)	단일중요성	단일중요성	단일중요성	이중중요성
공시 위치	연차보고서 권고(국별 선택)	연차보고서 권고(자율운영)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별도 연차보고서
최초 적용일	미정	미정	2023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서술식 공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시나리오 분석 공시	필수	필수	조건부	필수

5)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S1), 기후 관련 공시(S2)

표 3 의 계속

내용	TCFD	IFRS S2	SEC	CSRD(ESRS)
Scope 1, 2 배출량 공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Scope 3 배출량 공시	조건부	필수	조건부	필수
산업별 요구 공시	권장	필수	선택	필수

출처: 정준희(2023. 4. 6.), 「국내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의 이해」(발표자료)

우리나라

정책 당국은 글로벌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ESG 정보공개와 책임투자 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ESG 공시 확대, 책임투자 활성화, 의결권 자문사 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이 포함된 정책 방안을 발표하였다.

환경(E)과 사회(S)가 포함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1단계로는 2025년까지 ESG 가이드언스를 제시하고 기업의 자율 공시를 활성화할 계획이고, 2단계로는 2030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ESG 보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3단계로 2030년 이후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추진 예정이다.

다.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서 현황과 이해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보고서 발간 목적과 기후 관련 정보 공시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비재무정보 보고서 발간 목적을 살펴보면, 해외에서는 주로 투자자나 NGO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활용되나, 국내에서는 기업 홍보용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상투적인 내용이나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공시하여 질적 수준이 낮은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기관은 단일중요성과 이중중요성 관점의 보고서를 모두 발간하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장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목적 또한 상이하다. TCFD 권고 이후 상장기업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를 활용하나, 공공기관은 규제 당국의 요구에 대응하고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이를 발간한다. 2022년 공시기준 약 20여 개 공공기관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위험에 직면한 주요 공공기관들은 GRI 기준 위주의 과거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리스크 및 중대성 평가 항목에 기후요소를 누락하고, 기후요소를 포함하더라도 Scope 3 정보 공시는 누락하고 있다.

정준희·기도훈(2022)⁶⁾은 국내 상장기업 지속가능성보고서의 IFRS S1과 S2 수용 현황을 평가하고자 세부 주제별 개별 측정문항들의 공시 여부(공시율) 및 공시 품질(합계 및 평균)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IFRS S2 기후영역의 세부 주제별 평균 공시율이 40% 이하로 다소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필요성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기관의 환경 관련 경영평가 지표에는 모든 기관의 평가를 통일시키고자 녹색제품 구매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의 획일화된 Scope 2(간접배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의 절감을 위해서는 Scope 1(직접배출) 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보고범위 관련, 경영평가 등은 개별 기업을 중심으로 평가하지만,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범위는 IFRS에서 연결범위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다수의 사기업은 연결범위로 보고하고 있으나, 공기업은 현재 개별 기업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주주와 경영평가를 모두 만족하기 위해 연결범위로 보고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 이해관계자와 주주의 정보 목적은 상이하므로 주주 중심인 IFRS보다는 공공성 중점인 EU ESRS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6) 정준희·기도훈(2022),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IFRS S1, S2 수용 수준에 대한 연구」, pp. 16~17.

그리고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표에는 산업특성 지표가 부재하다.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과 IFRS S2 산업기반 지표는 투자자를 위한 정보이므로 2022년 개정된 GRI처럼 이해관계자를 위한 산업지표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공공기관의 특성과 주요 사업 분야를 반영하는 지표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린워싱⁷⁾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부정적인 요소도 정량 및 정성적으로 모두 공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Scope 3(기타 간접배출) 배출량 공시를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투자금의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다.

마. 향후 과제

향후 지속가능성 보고서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의무화 및 기준, 인증의 범위 등 마련
- IFRS S1, S2 도입 및 적용 범위 등의 실행 방안 마련
- Scope 3 배출량 산출 및 인증 방안, GHG 프로토콜 의존 문제 논의
-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공시기준 마련
- 자본시장(애널리스트)의 정보 해석 능력 증진
- 산업별 중요성 및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요성 평가 방법 마련



제2차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2023. 4. 6., 본원 8층 중회의실)

7)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

국가회계
재지통계



공지사항



구독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는 회계전문연구기관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발간하는 분기발간 물로서, 주요 내용으로 국가회계, 국가결산, 국가회계교육, 재정통계,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에 대한 동향 및 분석 자료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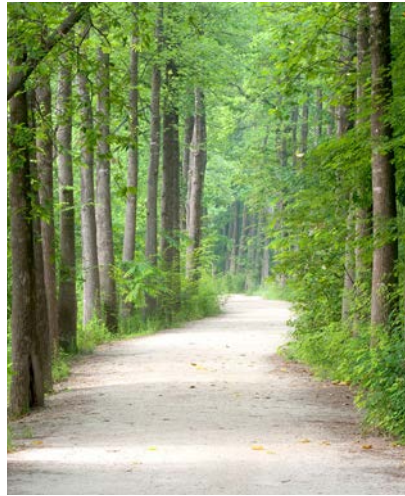
- 홈페이지 신청 <http://gafsc.kipf.re.kr>
- 이메일 신청 gafsc@kipf.re.kr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신 발간자료와 주요 발간자료 메뉴를 통해 연구보고서, 기타보고서, 브리프, 세미나자료 등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발간물 등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과 투명한 회계를 위한 노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앞장섭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265 Fax 044.414.2570

